

4주차

# 새로운 사회계층, 사족(士族)의 등장:1520년대

김 성 우

## 학습목차

## 학습목표

## 학습내용

### 01. 부를 쌓는 사람들

- 관료층
- 외방 유력층

### 02. 농장(農庄)의 발달

- 16세기 지주제의 발달
- 농장제의 발달 추이

### 03. 사족의 공인과 신분적 특권(1): 전가사변형 면제권

- 외방의 무단작폐자에 대한 처벌론의 대두와 전가사변 정책
- 사족층의 재규정화 작업의 추진
- 1524~1525년 전가사변 정책의 향방

### 04. 사족의 특권(2): 정직(正職) 독점권

- 사족 지위 영속성의 기초: 관직
- 잡류층(雜類層)의 사회적 지위
- 16세기 사족층의 무반(武班) 인식

### 05. 사족의 특권(3): 향촌 운영권

- 조선 초기 유향소(留鄉所)의 설치와 폐지 추이
- 지방관과 지역 유력층의 관계
- 1525년(중종 20) 사족의 국가공인 이후
- 향약(鄉約) 실험
- 서치(序齒) 논쟁
- 향당에서 사족의 자체 처벌권

## 4차시

# 사족의 특권(2): 정직(正職) 독점권

## 학습목표

- 관직을 통한 사족층의 외연 확대 과정을 살펴본다.
- 잡류층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살펴본다.
- 16세기 무반(武班)에 대한 사족층의 인식을 사례를 살펴본다.

## 학습내용

- 사족 지위 영속성의 기초: 관직
- 잡류층(雜類層)의 사회적 지위
- 16세기 사족층의 무반(武班) 인식

# 사족 지위 영속성의 기초 : 관직

# 사족 자격 유지의 최소 조건: 관직

- 국가의 정규 시험 합격: 생원, 진사
- 문·무반 및 참상직(6품) 이상의 전·현직 관직자
- 소과, 문과의 대과, 무과 합격자:  
국가 공인 지식인, 관직 후보자



증 6593(3).

어사화 관모

# 사족의 외연 확대

---

- **중종 20년(1525)**
- 4조(祖)내외(內外)가운데 한쪽이라도 과거 혹은  
음서로 문·무반 정직 6품 이상에 진출한 관료를  
배출한 가문의 후손 및 생원·진사  
그리고 그들과 인척관계에 있는 가문

# 사족의 외연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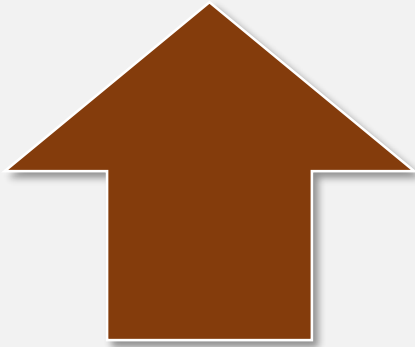
---

- 명종 대(1550~60년대)

“ 농장주 이상의 경제력을 보유한  
교생(校生)·학생(學生)을 비롯한  
업유자(業儒者)이면서 국방의 중추 역할을  
담당하는 기병인 정로위(定虜衛) 입속 대상자 ”



# 제한된 관직, 늘어난 사족



유교적 지식인을 모집단으로 하는 사족 증가



**관직은 <경국대전> 규정에 국한. 증가하지 않음**  
국가재정이 확장되지 않으면 관직 또한 증가하지 않음  
16세기 국가재정은 매우 악화된 상황

# 16세기 악화된 국가재정

---

- 현직 관료들의 녹봉 지급 중단
- 직전세 폐지
- 추가 설치된 관직이 경비 절감을 위해 폐지됨

## 16세기

# 악화된 국가재정 해결 방안

---

- 1 잡류가 진출하는 잡직과 축소  
양인들이 진출하는 정직과 증가
- 2 정직 가운데 비급료 관직인 체아직 증가

# 잡류층(雜類層)의 사회적 지위

# 잡류(雜類)의 정의

---

- 중앙 및 지방관청에 근무하는 실무담당 계층
  - 하급 행정담당자: 서리(書吏)·이서(吏胥)
  - 전문직 종사자: 의원(醫員)·산원(算員)·습독(習讀)

## 15세기 잡류의 지위

“ 근무 일수 2,600일을 채우면,당상 아문은 종7품에서,  
3품 이상 아문은 종8품에서 거관(去官)한 후,  
역승·도승(渡丞) 취재에 합격한 자는 서용한다 ”

『경국대전』 「이전(吏典)」, <경아전(京衙前)>, ‘서리(書吏)’

4주차

# 새로운 사회계층, 사족(士族)의 등장:1520년대

김 성 우

## 16세기 초반

# 잡류의 지위

---

- 궁핍한 유생이 녹봉을 받기 위해  
의학·율학 등 직역을 수행하기도 함
- 잡류들도 자신의 직책을  
문·무 관직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



## 16세기 초반

# 잡류의 지위

---

- 현관직(6품 이상)에 진출할 경우, 사족으로 자처
- 사족들이 잡과에 응시하여 잡류직을 수행하기도 함

16세기

# 잡류들의 정직 배제

---

# 16세기

## 잡류들의 정직 배제

---

- 1510년(중종 5): “역로가 회복될 때까지”라는 단서 아래, 역승 관할 역 7,8개 1찰방 관할 역으로 재편됨  
→ 서리의 불만 증가
- 역승 혁파 = 제민정책 철폐를 전제로 함

## 16세기

# 잡류들의 정직 배제

---

- 1519년(중종 14): 거관 서리에게 역승직 7개만 허용한다는 법 통과
- 1525년(중종 20) 사족 공인 이후 사족층의 입장
  - "미천한 서리와 관직을 같이 할 수 없다."
  - "문반의 하급정직인 역승직(종6품)을 잡류에 허용해서는 안된다."

# 16세기

## 잡류들의 정직 배제

---

- 1530년(중종 30) 정부의 입장
  - 서리 거관자: 도승이나 내수사의 별좌(別坐), 서제(書題)로 제한
  - 역승직 혁파, 찰방직으로 일원화
  - <대전후속록(大典後續錄)>에 삽입: 법적으로 추인 받음

# 1535년 잡류층의 정직 참여 불허 조처에 대한 사족들의 평가

유희춘(柳希春)

1574년(선조7) 국왕에게 조선왕조 개창 이래

수성(守城)군주들의 치적 중 하나로 종종 대

"서리가 역승이 되는 길을 혁파하고 찰방을 설치했다." 언급

16세기 후반 사림파 관료

역승 혁파 조처 이후 사족층의 정직 독점권이

부여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

## 1535년 이후

# 잡류의 신분적 지위 변화

- 잡류들은 사족보다 한 단계 낮은 ‘미천한 신분’으로 인식
- 점차 중인(中人)으로 자리 잡기 시작함
- **중인층은 1535년 사족층의 ‘정직 독점권’ 획득 이후,  
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계층이었음**

# 16세기 사족층의 무반(武班) 인식



# 충청도 이형손 가문(가평 이씨)

- 이다림(아버지, 태종 12년 무과, 오위도총부 부총관)
- 이형손(세종18년 무과, 병조참판)
- 이철영(아들, 진사, 익산 군수)
- 이장생(손자, 성종 21년 무과, 형조참판) · 이장경(진사, 예산 현령)
- 이제(증손자, 1549-1601, 진사,직장)

# 경상도 배덕문 가문(성주 배씨)

---

- 배현(태조5년 진사)
- 배치
  - 배현의 손자
  - 세종 대 무과,수군 도만호

# 경상도 배덕문 가문(성주 배씨)

---

- 배덕문 (1525-1603; 명종8년 문과, 사재감 정)
- 배설(아들, 1551-1599; 선조16년 무과, 경상 우수사)
- 배상호(손자, 1594-1632; 인조2년 생원)

# 17세기 전반 상황

---

- 문·무반 관직은 특정 가문에 세습, 고정되지 않았음
- 숭문(崇文)만을 지향하지 않음, 천무(賤武) 의식 없음

# 사족층의 무반 의식

---

- 유교적 지식인으로서의 활동, 문반 관료 지향
- 문과의 대과, 소과 합격자는 매우 적음  
(소과: 3년에 200명, 대과: 33명 선발)
- 사족 자제들은 무반 출사를 통해 정직에 접근하고자 함

# 무관 진출을 위한 경쟁

---

- 매년 문·무반 정직 초입사 직과: 200개
- 사족들은 무반직을 차지하기 위해  
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음

# 무관 진출을 위한 경쟁

---

- 제한적인 관직 vs 사족층의 급증
  - 당시 사회, 정치적 모순을 해소 필요
  - 중종 30년(1535) 사족층의 ‘문·무반 정직 독점권’ 부여

## 기대승이 설명한 사족의 정의

---

“ 경(卿)·사(士)의 후손은 대대로 그 업을 지키는데  
이를 사족이라 한다. 그들은 모두 시·서(詩書)를 외우고 익히는데,  
그것에 능하지 못한 사람은 무예를 익힌다. “



# 마무리

---

- 사족의 특권: 정직독점권
- 사족간 관직을 둘러싼 경쟁
- 사족들만의 정직 차지의 특권

예)잡직 봉공자의 역승 임명 불허 조치

# 다음 차시에서는

---

- 사족의 특권(3): 향촌 운영권

## SOURCES

[출처01] 국립중앙박물관

<https://www.museum.go.kr/site/main/relic/search/view?relicId=8312>



YONSEI  
UNIVERSITY  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